

# 기술혁신과 제조물책임과의 연관관계에 관한 연구

최병록\*

## I. 서론

현대사회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으로 이전에 생각하지 못하였던 과학기술이 적용된 제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신기술의 개발로 제조된 다양한 상품은 우리들의 생활을 더욱더 편리하고도 풍족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하여 신기술을 접목한 신제품을 계속하여 개발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신기술이 접목된 제조물에서 안전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현대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는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게 된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들이 지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의 근거인 결함의 유형에는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데, 이는 제품의 기술혁신이나 신제품의 개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나아가 결함으로 책임이 발생하더라도 제조업자는 면책사유가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즉, 개발당시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설사 제조물의 결함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업자는 면책되게 된다.

신제품의 개발과 첨단기술의 적용은 과학기술의 진보를 통한 발전된 사회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이지만, 한편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제품을 개발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성에 대하여 소비자가 전적으로 감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에 기술혁신으로 인한 신제품의 개발과 제조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그 접점을 탐구하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II. 제조물책임과 기술혁신(과학기술)과의 관계

### 1. 제조물책임

#### 1) 제조물책임의 의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자에게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법리를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 Produkthaftung)이라고 한다. 제조물책임에서는 결함제조물의 제조업자만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넓게 제조·판매에 관여한 모든 자를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로 하는데 특징이 있다.<sup>1)</sup>

\* 최병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010-5468-8605, brchoi@seowon.ac.kr

1) 제조물책임에 관한 EU통일지침에서는 완성품의 제조자, 원재료·부품의 제조자, 제조물에 성명·상표 기

산업사회의 진전과 현대의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도 고도화·복잡화 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는 상품의 성분, 성능, 제조공정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스스로 알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여도 소비자는 소송수행 및 입증 등에 어려움이 적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와 제조물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결함 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와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여 왔으며, 이제는 입법적으로 제조업자에게 무과실책임<sup>2)</sup>을 지우기까지 되었다.

제조물책임법이 없었을 때에는 어떠한 법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었는가? 제조물 관련 사고의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의 규정을 적용하여 구제하여 왔다. 결함제조물의 피해자(소비자)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가해자(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②손해의 발생 ③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손해의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만 된다.

그러나 제조물의 제조기술이 고도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곤란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제조업자의 과실」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을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인 요건으로 책임요건을 변경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보다 쉽게 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①제조물의 결함 ②손해의 발생 ③제조물의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책임요건을 변경하였다. 즉 주관적인 「과실」의 요건이 객관적인 제조물의 「결함」으로 전환된 것이다.

<표 1> 민법과 제조물책임법의 책임요건 비교

구 분	민 법	제조물책임법
요 건	① 제조업자의 과실 ② 손해의 발생 ③ 제조업자의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① 제조물의 결함 ② 손해의 발생 ③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발생사이의 인과관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책임요건의 변경을 민법과 제조물책임법을 비교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물에 객관적으로 나타난 「결함」이 있으면 제조업자의 주관적인 요소인 「제조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에서 「무과실책임」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함」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함책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제조물책임원칙을 보다 더 적절하게 설명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되었다. EU지침 제1조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라는 문구가 없고 제4조의 피해자가 부담하는 입증책임규정에도 이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는 모두 제조업자에 해당한다(제3조 제1항). 또한 EU지역 내에 업으로써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자도 제조업자로 간주된다(제3조 제2항). 제품의 제조업자를 확정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수입품에 있어서 그 제조자는 알 수 있으나 수입한 자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각의 공급자를 제조자로 간주한다(제3조 제3항). ; 강창경·최병록·박희주,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94-03, 1994, 230면 참조.

2) 여기서 무과실책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순수한 의미에서의 무과실책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의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이나 일본에서 제조물책임을 무과실책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제조업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제조물의 결함을 요건으로 하는 이른바 「결함책임」을 통칭하여 부르는 것이다.

에서 과실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 무과실책임을 채택한 이유에 대해서 EU지침 전문에서는 「특히 전문적 기술이 향상되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 최신기술에 의한 생산에 내재하는 위험의 공평한 배분이라는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 2) 제조물책임에서 책임요건으로서 결합

제조물책임법에서 책임요건으로 도입한 「결합」은 각국의 입법례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결합의 개념이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어 있더라도 공통적인 개념은 「제품의 안전성이 결여」된 안전성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점이다.

### 가) 미국

미국은 판례상으로 확립된 제조물책임원칙에 따라 판례에서 그 개념을 정립하여 왔다. 책임요건으로 「제조업자의 과실」 대신에 「제조물의 결합」을 요구하는 엄격책임론을 판례상 확립한 대표적인 사건은 1963년의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에서 내린 그린맨(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사건<sup>3)</sup>이다. 이 사건 판결에서 트레이너(Traynor)판사는 「제조업자가 그의 제품이 점검되지 않고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시장에 유통시켜 그것에 결합이 있었기 때문에 인체에 상해를 줄 수 있는 결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때에는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in tort)을 진다.」라고 하여 제조물책임원칙으로서 기존의 과실책임에서 엄격책임으로 전환하였다.

그 후 제조물책임에 대한 엄격책임이론의 적용은 다른 주법원과 연방법원에 의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채택되었다. 미국 각주법원의 엄격책임이론의 채택현황을 1983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45개주가 엄격책임이론을 채택하였으며 4개주가 엄격책임원칙의 채택을 부인하였고 2개주는 이에 대한 입장이 불분명하다.<sup>4)</sup>

위의 판결에서 보여준 이론을 받아 1965년에 발행한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of Tort, Second) 제402조 A, 제402조 B에서 엄격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3)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목공작업을 위하여 톱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구멍 뚫는 기계(천공기) 혹은 선반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용 전동공구의 제조자와 판매상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이 문제가 되고 있다. 원고는 판매상을 통하여 이 공구의 전시회에 참가한 기회가 있었으며, 제조업자가 제작한 안내서를 통해서도 이 공구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있었다. 원고의 처는 1955년 크리스마스에 이 공구를 구입하여 원고에게 선물하였다. 1957년에 원고는 이 공구를 선반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품을 구입하였다. 원고가 이 공구를 사용하여 아무 어려움없이 여러 차례 목공작업을 한 이후, 어느 날 갑자기 작업 도중에 이 공구로부터 나무조각이 튀어나왔으며, 이 나무조각이 원고의 이마를 때려서 원고는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부터 10개월 반이 지난 후 원고는 판매상과 제조자에 대하여 보증금부위반을 이유로 청구권을 행사하였고, 결국은 판매상과 제조업자를 상대로 하여 보증금부위반의 위반과 손해발생에 대한 과실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흔히 그린맨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에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그 판결을 통하여 엄격제조물책임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확립하였다. 이 판결을 언도한 트레이너(Traynor)판사에 의하면, 「결함제조물로부터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제조물을 유통시킨 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자신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피해자가 부담할 수는 없으며, 또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조물의 결합 유무에 대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제조물이 신체나 생명에 침해를 야기하는 결합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는 제조업자가 엄격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그린맨사건의 판결은 원고가 전동공구를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한 경우는 그 공구의 설계상 혹은 제조상의 결함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면, 제조자의 엄격제조물책임이 인정되고, 보증위반의 통지 여부는 엄격책임의 인정에 관계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 후 제조물책임에 대한 엄격책임이론의 적용은 다른 주법원과 연방법원에 의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채택되었다.

4) 김성탁, 「제조물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1, 57-58면 참조.

**리스테이트먼트 제402조 A : 이용자나 소비자의 유형적 손해에 대한 제품매도인의 특별책임**

- (가) 이용자나 소비자 및 그 재산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위험한 결함상태에 있는 모든 제품(product in a defect condition unreasonably dangerous)을 판매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종 이용자나 소비자 및 그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유형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a) 매도인이 당해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것
  - (b) 제품이 판매된 당시의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변경이 가해지지 않은 채 이용자 또는 소비자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실제로 그러한 상태에 도달되어 있을 것.
- (나) 전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a) 매도인이 문제된 제품의 준비와 판매를 함에 있어서 가능한 모든 주의를 기울인 경우 및
  - (b) 이용자 또는 소비자가 직접 매도인으로부터 그 제품을 매수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매도인과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즉, 리스테이트먼트 제402조 A에 의하면 엄격책임에 의한 제조물책임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원인이 된 제조물이 결함상태에 있고 또한 불합리하게 위험한 상태에 있는 제품에 의하여 야기된 이용자, 소비자 또는 그로부터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과실없이 지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다. 동 조항은 다음과 같다.

현재 리스테이트먼트 제402조 A에 의한 엄격책임이론은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채택됨으로써 현재 제조물 책임법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되고 있다.

더 나아가 리스테이트먼트는 부실표시<sup>5)</sup>에 기한 엄격책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02조 B에서는 「동산의 매도인의 소비자에 대한 부실표시」라는 표제 하에서 각각 제조물의 엄격책임을 규정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리스테이트먼트 제402조 B : 동산매도인의 소비자에 대한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 by Seller of Chattels to Consumer)**

동산(Chattels)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광고나 라벨,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대중에게 자기가 판매한 동산의 성질이나 품질에 관한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를 한 경우에는 그 부실표시에 대한 정당한 신뢰(Justifiable reliance)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유형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 (a) 부실표시가 사기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며,
- (b) 소비자가 문제된 동산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지 않았거나 매도인과의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하여 그 후 *Codling v. Paglia*의 사건<sup>6)</sup>에서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자 또는 소비자이외의 제3자

- 5) 부실표시란 광고, 라벨 등의 방법에 의해 공중에 대해서 이루어진 제품의 성능·품질·안전성에 관한 사실에 대한 진실에 반하는 표시이다. 오늘날의 선전·광고의 시대에 있어서 제품에 관한 표시는 제품의 유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법령이나 업계에 의해 규제되는 경우가 많다 ; 赤松俊武, 米國における製造物責任, 安田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1981, 22-23면, 57면
- 6) *Codling v. Paglia*, 32 N.Y.2d 330, 298 N.E.2d 614, 345, N.Y.S.3d 461 (1973). 이 사건은 피고 P가 Chrysler 제품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원고 C의 차와 충돌하여 원·피고가 모두 부상을 입었는데 원고 C는 P에게는 과실을, Chrysler에게는 과실과 보증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소송 1), P는 Chrysler에게 과실과 보증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소송 2).

(nonuser, bystanders)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제조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판결이 나오는 등 그 범위를 확대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up>7)</sup>

그 후 판례의 재해석을 통하여 만든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402조 A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제조물의 결함이란 「제조물의 이용자, 소비자 또는 그의 재산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위험한 결함상태(in a defective condition unreasonably dangerous to the user or consumer or to his property …)에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 설계상의 결함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손해확대예의 간접기여(이른바 2차 충돌의 문제)의 문제이다.

제조물의 설계가 손해를 야기하는 직접적인 결함은 아니고 다른 원인에 의해 야기된 손해의 정도를 확대하는 성질의 위험성을 가진 경우에 제조자는 책임을 부담할 것인가이다.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2차 충돌(second collision)」 또는 「내충돌성(crashworthiness)」이라고 불리며 자동차의 설계 결함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1966년 제7순회구 연방항소법원은 Evans v. General Motors Corp. 사건판결에서 자동차의 충돌은 제조물의 「의도된 용법(intended use)」이 아니며 자동차 제조자는 자동차의 설계이외의 원인에 의해 야기된 사고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자동차를 설계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1968년 제8순회구 연방항소법원은 Larsen V. General Motors Corp. 사건판결에서 제조자는 제조물의 「의도된 용법」뿐만 아니라 「예견가능한 용법(foreseeable use)」에 의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제조물을 설계할 의무가 있으며 자동차의 충돌은 그 예견가능한 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차충돌에 대한 제조자의 제조물책임은 긍정하였다. 현재 2차충돌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은 대부분의 주에서 긍정하고 있다.<sup>8)</sup>

한편 1992년부터 새로운 리스테이트먼트의 개정작업이 시작되어 1997년 12월에 제조물책임에 관한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가 확정되었다. 전체적으로 4개장 2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된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2조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의 종류라는 제목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결함을 유형화하여 정의하고 있다. 즉, 제조상, 설계상 및 지시·경고상의 결함으로 분류하여 각각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 제2조 제조물의 결함의 종류

판매 또는 공급하는 시점에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제조상의 결함을 가지거나, 설계에 결함이 존재하거나 또는 지시나 경고가 부적절하여 결함으로 되는 경우, 그 제품은 결함제품이 된다.

- (a) 제품의 준비 및 마케팅에 모든 가능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해도, 제품이 그 의도한 설계로부터 벗어난 경우, 그 제품에는 제조상의 결함이 있다.
- (b) 판매자, 공급자, 상업적 연쇄유통과정의 피승계인(선순위자)이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다면, 당해 제품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견가능한 위험을 감소 또는 회피할 수 있었고 또한 그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않은 것이 당해 제품을 합리적으로 안전하지 않게 한 경우, 그 제품은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
- (c) 판매자, 공급자, 상업적 연쇄유통과정의 피승계인(선순위자)이 합리적인 지시 또는 경고를 제공하였다면, 당해 제품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상가능한 위험을 감소 또는 회피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지시나 경고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당해 제품을 합리적으로 안전하지 않게 한 경우, 그 제품은 부적절한 지시 또는 경고로 인한 결함제품이 된다.

7) 표시된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경우는 사기책임이 생긴다. 약의 부작용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표시하여 판매한 사례에서 사기가 주장되었다. Toole v. Richardson-Merrell, Inc. 251 Cal. App. 2d. 689, 60 Cal Rptr 398(1967) ; 赤松俊武, 앞의 책, 57면.

8) Horn v. General Motors Corp., 17 Cal. 3d 359, 131 Cal.Rptr. 78, 551 p.2d 398(1976) ; Bolm v. Triumph Corp., 33 N.Y.2d 151, 350 N.Y.S.2d 644,305 N.E.2d 769(1973)

## 나) EU

EU지침에서는 「그 제조물의 표시, 그 제조물의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용도, 그 제조물이 유통에 놓여진 시기 등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사람이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하고 있는 경우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한다(6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결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려하는 요소로 제조물의 표시, 그 제조물의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용도, 그 제조물이 유통에 놓여진 시기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기대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결함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물의 안전성이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된다. 여기서 안전성이라 함은 해당 제조물에 내포되어 있는 부품의 안전성 및 재산상 피해의 위험과 관련한 안전성, 그리고 사망 또는 신체적 피해의 위험과 관련된 안전성을 포함한다(제3조 제1항). 또한 동조는 안전성에 대한 일반인의 기대가능성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제조물의 판매방법, 목적, 형태, 표시의 사용, 지시·경고, 해당 제조물에 대해 또는 해당 제조물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항, 해당 제조물이 제조자로부터 타인에게 공급된 시점 등이다(제3조 제2항(a)(b)(c) 참조).

유통된 시기는 결함유무의 판단기준시점이 된다. 완성품의 경우 제조자가 판매를 위하여 자유의사에 의하여 제품을 유통업자에게 보낸 시점을 말한다. 그리고 부품인 경우에는 완성품 제조자에게 납품된 시점을, 원재료인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납품된 시점을 말한다.

나아가 「나중에 보다 좋은 제조물이 유통에 놓여졌다고 하는 이유만으로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6조 2항)」라고 한다. 따라서 기술의 진보에 따른 우수한 제품이 나오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 다) 일본

결함이라 함은 「제조물의 특성,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 및 제조업자에 의해 제조물이 인도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하고 있는 것(제2조 2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함이라 함은 「제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의 하자(일본 민법 제57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하자)에 포함되지만 안전성과 관련되는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간단한 품질의 하자는 본법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결함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지시·경고상의 결함(표시상의 결함이라고도 한다)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일본법의 결함의 정의는 세 가지 유형을 해석상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결함은 새롭게 도입되는 개념이며 주로 재판규범으로서 기능하지만 사고의 방지나 재판 외에서의 분쟁처리에 있어서의 규범으로서도 기능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피해자의 입증부담이 과대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가능한 한 그 명확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일본법에서는 「제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하고 있는 것」이라는 정의를 두는 외에 결함의 유무에 대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소비자와 기업 쌍방의 예측가능성이나 투명성을 높이고, 제품의 안전성 향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므로 결함판단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을 예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때 결함개념의 명확성의 요청과 쟁점의 확산(입증부담의 증가) 방지에 의한 피해자구제의 요청과의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공통성, 중요성, 양당사자에 중립적인 표현이라는 점을 염두로 고안하여, 「제조물의 특성」,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 및 「제조업자에 의해 제조물이 인도된 시기」의 세 가지 요소를 예시하였다.

## 라)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결함이라 함은 「제조물에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의 하자(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하자)에는 포함되지만 안전성과 관련되는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간단한 품질의 하자는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결함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법에서는 결함의 정의에서 이것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그리고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상기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의 결함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결함발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sup>9)</sup>

## 2. 기술혁신(과학기술의 수준)의 문제와 제조물책임과의 관계

### 1) 과학기술수준(개발위험)의 항변 또는 기술수준의 항변의 의의

결함을 판단함에 있어서 제조물의 제조당시의 과학·기술의 수준은 과연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과학·기술수준하에서 결함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위험과 인식하더라도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서까지 제조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가 문제로 된다.

한편, 유럽이나 일본,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기술수준의 항변과 같은 취지의 개발위험의 항변을 규정하여 제조업자에게 면책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개발위험」이라 함은 제품을 유통시킨 시점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수준에 의해서는 거기에 내재하는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한 위험을 말한다. 제조업자에게 개발위험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시키면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이 저해되거나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익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에서 당해 결함이 개발위험에 상당하는 것을 제조업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개발위험의 항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하여 각국에서는 어떠한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결함판단과 개발위험의 항변, 기술수준의 항변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 2) 제조물책임에서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로서 과학기술수준(개발위험)의 항변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

결함있는 제조물에 기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정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또는 항변사유)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

9)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되는 것은 「개발위험(개발도상의 책임)의 항변」(미국에서는 이를 「기술수준의 항변」이라고 한다.)이다.

개발위험이라 함은 제조물을 유통에 둔 시점에 있어서 과학·기술지식의 수준으로는 거기에 내재하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는 제조물의 위험을 말한다. 이러한 개발위험에 대하여는 제조업자에게 항변사유로 인정하는 문제가 면책사유로 논의되는 것이다. EU지침 제7조(e)에 있는 것처럼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에 있어서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그 결함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개발위험의 항변문제는 EU지침이 성립될 때에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

이것을 미국에서는 기술수준(State of art)의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 기술수준이라고 함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달성 가능성 또는 특정업계에서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달성수준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제조물책임에서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로서 개발위험의 항변에 대한 EU지침의 규정을 비롯한 각국의 입법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 가) 미국

미국에서는 당시의 과학·기술수준하에서 결함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위험과 인식하더라도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서까지 제조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과실책임원칙하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제조업자의 책임을 부정하였으며, 따라서 제조업자의 기술수준(State of the art)의 항변은 당연히 승인되고 있다. 그러나 엄격책임하에서는 제조자의 주관적인 과실이 아닌 제조물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결함이 제조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제조자에 의해 위험을 인식할 가능성이나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는가 여부는 결함의 판단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이점에 관한 미국의 각 법원의 견해는 엄격책임하에서도 역시 제조자에 의한 기술수준의 항변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 대다수의 주에서 채용되고 있으며 위 항변을 부정한 판례는 1982년 뉴저지주 대법원에서 내려진 Beshada v. John-Manville Products 사건 외에 소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 후 2년이 지나 같은 뉴저지주에서 의약품 사건에서 「앞의 배세다(Beshada)판결의 판시는 의약품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기술수준의 항변을 결과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상 미국에서의 기술수준의 항변을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현재의 통설적 입장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좋다.

#### 나) EU

EU지침은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로서 다음의 6가지를 열거하여 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제조업자가 입증하면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즉, ①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아니한 사실, ② 제반사정을 고려해 보아 그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결함이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후에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사실, ③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경제적 목적을 갖고 판매, 기타의 방법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한 것이 아니고, 또한 영업의 목적으로 제조 혹은 공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④ 공적기관이 정한 강제기준에 따라 제조하였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⑤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의 수준으로서는 결함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사실, ⑥ 부품제조업자의 경우, 그 부분이 사용된 제조물의 설계가 원인이 되어 결함이 발생하였거나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의 여섯 가지를 들고 있다.

EU지침 제7조(e)에 있는 것처럼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에 있어서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그 결함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 이 개발위험의 항변문제는 EU지침이 성립될 때에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

#### (1) 개발위험의 항변의 채택여부

개발위험의 항변을 채택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EU지침안 심의 과정에서 각국의 견해가 대립하여 통일적인 형태의 합의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타협이 이루어졌다. 즉 EU지침에서는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였으며 다만 가맹각국에서 국내 입법에서는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할지 여부를 위임하여 둔 것이다. 이러한 개발위험의 항변을 채택할지 여부에 대한 대립된 견해의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정설 : 이 항변을 인정할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을 무과실책임화하는 의의가 크게 감소하고, 이 항변을 허용해서 신제조물이 가지는 미지의 위험에 의한 사고손해를 소비자측이 부담하게 되는 것은 개발단계에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조물의 시장출하를 인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시험용 쥐(모르모트)의 역할을 담당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② 인정설 :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예견할 수 없는 결함에 대하여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면 기업에 예상외의 손해를 초래하고 산업계의 신제조물 개발 의욕이 상실되어 유용한 제조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게 되어 결국 소비자, 산업계, 모두의 손실로 돌아가며, 배상액이 크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여 담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 (2) EU지침의 규정과 EU가맹 각국의 입법동향

EU에서는 각국의 의견대립은 타협의 산물로 합의하였다. 즉,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유통에 둔 시점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의 지식수준에 의해서는 그 결함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업자는 이 지침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7조 e호). 그러나 각 회원국은 지침 7조의 e호와는 달리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유통에 둔 시점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의 지식수준에 의해서는 그 결함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음을 입증해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는 규정을 유지하거나 또는 지침 15조 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증할 수 있다(15조 1항 b호)라고 규정하여 타협된 것이다.

EU가맹국의 입법동향을 살펴보면 룩셈부르크와 프랑스만이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대다수 국가는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도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우리나라의 1989년 한국소비자보호원(현재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의 시안은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에 있어서의 과학, 기술적 수준으로 당해 결함을 별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자는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함으로써 개발위험의 항변을 부인하고 있다(3조 2항).

생각건대 개발위험의 항변은 소비자보호측면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개발위험과 같은 문제에 관해서는 특정제조물의 제조·판매자 만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사회보장 제도등의 활용도 포함하여 사회전체가 기술개발에 수반되는 손실을 부담해서 피해자를 구제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 다) 일본

제조업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을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첫째, 제조업자등이 그 제조물을 인도한 당시 즉 제조물이 유통된 시기의 과학 또는 기술에 관한 지식에 의하여 그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제조물책임을 지지 않는다.(개발위험의 항변)

둘째, 다른 제조물의 부품·원재료로 사용되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결함이 전적으로 부품·원재료를 사용하는 제조업자의 설계에 관한 지시에 따른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부품·

원재료의 제조업자에게 그 결함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때에는 부품·원재료의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부품·원재료 제조업자의 면책)

다만, EU지침에서 규정한 것과의 차이는 부품·원재료제조업자에게 일정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본에서의 부품·원재료제조업자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볼 수 있다.

## 라) 중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조물책임법으로 인하여 제조업자에게 엄격책임이 주어진 대신에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제조물의 결함이 있더라도 제조업자가 면책사유를 입증하였을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을 면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면책사유는 제조물책임을 면하는 사유이고, 과실책임 또는 계약책임 등 다른 법리에 의거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제품품질법 제41조 제2항에서도 「①제품을 유통과정에 두지 않는 경우, ②제품을 유통과정에 둘 때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③제품을 유통과정에 둘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의 세 가지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의 면책사유는 EU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으며, 이 면책사유가 적용되는 것은 시험단계에 있는 미완성품과 제품이 도난당해 유통과정에 놓여진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중국에서 이 면책사유가 인정된 판례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기술 감정을 위해 보내진 전기보온화(電氣保溫靴)에 결함이 있어 그것을 제멋대로 자택에 가지고 간 감정소의 직원이 사용 중에 감전사(感電死)한 사건으로 법원은 그 전기보온화가 유통과정에 두어진 상품은 아니라고 인정하여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둘은 화장품회사의 발매직전의 화장품을 훔쳐 애인에게 선물한 결과 그것을 사용한 그녀가 얼굴 피부에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법원은 제품이 피고에 의해 유통과정에 두어진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sup>10)</sup>

둘째의 면책사유는 「제품을 유통과정에 둘 때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는 결함의 존재시기에 관한 추정규정으로서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의 하나다. 따라서 이는 미국이나 유럽, 우리나라와 일본의 제조물책임법보다도 피해자 측에 유리하고 제조자에게 엄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11)</sup> 이러한 사유가 규정된 것은 재판 실무상 결함의 존재시기에 대하여 제품이 유통과정에 둔 때에 존재하고 있다는 추정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의 면책사유는 EU지침을 비롯한 각국의 제조물책임법에서 대부분 규정하고 있는 「개발위험의 항변」에 해당되는 것으로 중국의 판례실무에서 아직 이러한 사유를 인정한 사례는 볼 수 없다. 여기서 개발위험의 항변의 기준으로 되는 과학·기술수준에 대하여는 중국 제품품질법은 아무런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지만 법이론상의 해석과 재판실무상의 운용에 있어서 EU와 일본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보아 최고의 과학기술지식의 수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sup>12)</sup>

중국의 제품품질법에서는 부품·원재료 제조업자의 항변(결함이 다른 제조업자가 행한 설계에 기인하거나 제작에 관한 지시에 따른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본법이나 우리나라 법에는 규정하고 있는 태도와 다르다.

10) 허재창,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소고”, 「해양비즈니스」 제4호, 해양비즈니스학회, 140-141면.

11) 崔光日, “中國の製造物責任における歸責原理”, 「中央大學大學院 研究年報」, 第28号 1999. 2., 119面.

12) 하중선·최병록, 「제조물책임법과 결함방지대책」, 서울 : 한국표준협회, 166-167면.

## 마) 우리나라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 제4조에서는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sup>13)</sup> 이는 제3조에 기해 제조업자 등이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당해 제조업자가 일정한 사정을 입증함으로써 제3조에 규정하는 배상책임을 면한다는 취지이며, 민법 기타의 법률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면책사유는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둘째,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셋째,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넷째,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이다.

개발위험이라 함은 제품을 유통시킨 시점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수준에 의해서는 거기에 내재하는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한 위험을 말한다. 제조업자에게 개발위험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시키면 연구 및 기술개발이 저해되거나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익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당해 결함이 개발위험에 해당된다는 것을 제조업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개발위험의 항변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위험을 항변으로서 명시함으로써 고도의 과학·기술수준에 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입증책임이 제조업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명백하게 되며 심리의 신속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개발위험의 항변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수준」의 해석이 문제로 되지만 본법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수준」이라고 하면 결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정도로 확립된 지식의 총체이며, 또한 특정인이 가진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지식의 총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즉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확립된 지식이라면 초보적인 지식에서 최고수준의 지식까지 전부가 포함되게 되며 스스로 면책되기 위해서는 당해 결함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입수가 가능한 최고수준의 지식에 비추어 결함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발위험의 항변에 대해서는 입수가 가능한 최고의 과학·기술의 수준이 판단기준으로 취해지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상과 같은 제조업자의 면책사유가 있더라도 제조업자 또는 보충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공급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개발위험의 항변, 구속적 법령기준준수의 항변 및 부품·원재료 제조업자의 항변)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제조물을 공급한 자는 사후에 제조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만약에 결함이 확인되면 즉시 리콜 등의 개선조치를 취하거나 설계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3) 제4조(면책사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 3) 결함판단과 과학기술수준(개발위험)의 항변 또는 기술수준의 항변과의 상관관계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제품을 유통시킨 시점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수준에 의해서는 거기에 내재하는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한 위험인 개발위험에 대하여는 대체로 제조업자의 항변을 통하여 면책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제조업자에게 개발위험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시키면 연구 및 기술개발이 저해되거나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익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당해 결함이 개발위험에 해당된다는 것을 제조업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개발위험의 항변이 필요하다는 측면도 이해는 된다.

또한 개발위험을 항변으로서 명시함으로써 고도의 과학·기술수준에 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입증책임이 제조업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명백하게 되며 심리의 신속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개발위험의 항변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수준」의 해석이 문제로 되지만 본법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수준」이라고 하면 결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정도로 확립된 지식의 총체이며, 또한 특징인이 가진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지식의 총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즉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확립된 지식이라면 초보적인 지식에서 최고수준의 지식까지 전부가 포함되게 되며 스스로 면책되기 위해서는 당해 결함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입수가능한 최고수준의 지식에 비추어 결함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발위험의 항변에 대해서는 입수가능한 최고의 과학·기술의 수준이 판단기준으로 취해지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새롭게 개발되는 각종 제조물은 기본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있지만 가연 어느 정도, 어느 범위까지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는지는 기업에게 영원한 과제일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이에 대하여 제조물의 결함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요소로 제시한 것은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을 들고 있다.

대법원은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배상의무와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하여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것을 결함 내지 하자로 규정하여 피고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sup>14)</sup>

위의 판례에서 보듯이 대법원은 결함을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다만 결함과 하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판결에서는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라고 구체적인 결함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현대의 기술수준」이라 함은 제조물을 유통시킬 당시의 최고·최신의 기술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경제성에 비추어」라 함은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Cost)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 안전성을 갖춘 제조물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면 안전성이 있는 제조물의 제조를 제조업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경제성이라는 요소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제성」이라는 요소는 제조업자의 사정을 고려하기 위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를 검토해보면 1차적으로 결함의 유무에 대한 판단에서 과학기술의 문제(기술혁신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를 거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에

14)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대하여 현대의 과학기술의 수준(개발위험)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결함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2차적으로는 결함여부를 판단하여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였더라도 그 결함의 발생이 제조물을 유통시킬 당시의 최고·최신의 기술수준에서 결함발생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제조물에 결함이 있더라도 제조업자에게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시켜준다는 구도를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술혁신에 따른 제조물의 품질향상과 편리성의 추구, 안전성의 제고 등 다양한 성과가 나올 수 있지만 현대의 과학기술수준으로 확보가능한 제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균형있는 시각과 노력이 있지 않으면 소비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결함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막지 못하며, 결함제품에 대한 면책사유로서 개발위험의 항변에 대한 완화된 판단이 나온다면 여전히 결함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안전의 저해를 막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창경·최병록·박희주(1994),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94-03, 230면.
- 김성탁(1991), 「제조물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57-58면.
- 최병록(1994), 「제조물책임의 법리와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중선·최병록(2000), 「제조물책임법과 결함방지대책」, 서울 : 한국표준협회.
- 김상용(1994), “제조물책임의 법리구성”, 「인권과 정의」제217호.
- 허재창(2004),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소고”, 「해양비즈니스」제4호, 해양비즈니스학회.
- 崔光日(1999), “中國の製造物責任における歸責原理”, 「中央大學大學院 研究年報」, 第28号, 119面.
- 小林秀之(1998), 「新 製造物責任法大系 I: 海外篇」, 東京 : 弘文堂.
- \_\_\_\_\_ (1998), 「新 製造物責任法大系 II: 日本篇」, 東京 : 弘文堂.
- 平野 晉(1995), 「アメリカ製造物責任法の新展開」, 東京 : 成文堂.
- 赤松俊武(1981), 「米國における製造物責任」, 安田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 22-23면, 57면.
- 浦川道太郎(1992), “グローバル時代と製造物責任法”, 「ジュリスト」 第1000號(1992. 5. 1-15).
- Traynor, Roger J.(1965), “The Ways and Meanings of Defective Product and Strict Liability”, 32 *Tenn. L. Rev.*
- United States. Dept. of Commerce(1980), *Report on Product Liability Insurance Ratemaking, Washington : Task Force on Product Liability and Accident Compensation*, U.S. G.P.O.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 Codling v. Paglia, 32 N.Y.2d 330, 298 N.E.2d 614, 345, N.Y.S.3d 461 (1973).
- Toole v. Richardson-Merrell, Inc. 251 Cal, App. 2d. 689, 60 Cal Rptr 398 (1967).
- Horn v. General Motors Corp., 17 Cal. 3d 359, 131 Cal.Rptr. 78, 551 p.2d 398 (1976).
- Bolm v. Triumph Corp., 33 N.Y.2d 151, 350 N.Y.S.2d 644,305 N.E.2d 769 (1973).